#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57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정준호·이연희·김남희

윤후덕 • 손명수 • 이기헌

임호선 · 이학영 · 정진욱

박희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다른 지방공사에 비하여 사업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출자·투자·사채발행 등 자금운 용 관련 현행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가 원활 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사 업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투자·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 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 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 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제4항단서 신설).
- 다.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의 채무 중 주택도시 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채무의 경우에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64조의2제6항 신설).
- 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65조의3제2항).
- 마.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5조의3제3항).
- 바.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채 발행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함(안 제68조제3항 신설).

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 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 함(안 제71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하"공공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공주택사업
- 1.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 장관
- 2.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시·도지사 제6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기준"을 "기준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을 "제1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7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5(개발사업 시행자의 우선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공사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3.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
	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출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
	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
	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
	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
	<u>다.</u>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	<u>4</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t;단</u>	<u>다만,</u>
<u>서 신설&gt;</u>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
	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
	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 성 검토) ①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 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 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한다.

-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제2조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 는 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채무는 그 변 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 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 순위로 한다.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③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등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 2 ② (생 략)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④ ------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3항에 따른 기준

6. 공공주택사업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u> 카</u>
1.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행정
<u>안전부장관</u>
2.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시ㆍ
도지사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u>발행할 수 있다.</u>
<u>4</u>
<u>기준 또는 제</u>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 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 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생략)
- ⑥ (생략)
- ①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 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으로 본다.

<신 설>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u>8</u>
<u>제1항부터</u>
제7항
세71조의5(개발사업 시행자의 우
선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
행하는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
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공사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

다.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3.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